강간치상·강제추행치상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. 6. 23. 2016고합60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이도희(기소), 성병규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임문우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97,500원을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